

#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

##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!

- 특별징수의무자는 '16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(국내원천소득)의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'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대 상	: 법인지방소득세(이자·배당소득) 특별징수의무자
▶ 근 거	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
▶ 제출자료	: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(국내원천)의 이자·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※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<b>211</b> 인 경우만 작성·제출
▶ 제출서식	: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(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)
▶ 제출기한	: '17년 3월 31일까지

##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작성형태	제출방법	제출장소
전자파일	온라인 제출	위택스(www.wetax.go.kr)
	전산매체(CD, USB, DVD)에 담아 인편/우편 제출	관할 지자체
엑셀파일	온라인 제출	위택스(www.wetax.go.kr) 이택스(etax.seoul.go.kr)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
	전산매체(CD, USB, DVD)에 담아 인편/우편 제출	관할 지자체
기타(종이서류)	인편/우편 제출	관할 지자체

※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,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

※ 제출 시 인편/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

## 작성요령 및 기타 문의

- 위택스 공지사항(2016년 귀속 이자·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)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자번호·특별징수지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,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지방자치단체 세무과(부과과) 지방소득세팀